



Samchun Chemicals

## 물질안전보건자료(Material Safety Data Sheet)

### 에틸 알코올(Ethyl alcohol, Denatured, 95%)

#### Section 1 –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

가.제품명	에틸 알코올(Ethyl alcohol, denatured; Ethanol)
나.제품의 권리와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	본 제품은 실험실 및 연구용 시약, 산업용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
다.공급자 정보	
회사명 : 삼천순약공업(주)	주소 :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16번길 117(모곡동)
긴급전화번호 : 031-668-0700/3	담당부서 : 안전환경팀
인터넷주소: <a href="http://www.samchun.com">http://www.samchun.com</a>	

#### Section 2 – 유해성 · 위험성

##### 가.유해성·위험성 분류

-인화성 액체	구분2
-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	구분2(눈 자극성)
-생식세포 변이원성	구분1B
-생식독성	구분1A
-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	구분3(마취작용)
-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	구분3(호흡기계자극)
-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	구분1

##### 나.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표지 항목

###### ◦그림문자



###### ◦신호어

위험

H225 고인화성 액체 및 증기

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

H340 유전적인 결함을 일으킬 수 있음

###### ◦유해·위험 문구

H360 태아 또는 생식능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음

H335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

H336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

H372 장기간 또는 반복노출 되면 신체 중 간, 호흡기 계통에 손상을 일으킴

###### ◦예방조치문구

- 예방**
- P210 열·스파크·화염·고열로부터 멀리하시오 - 금연
  - P233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.
  -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.
  - P241 폭발 방지용 전기·환기·조명(...)-장비를 사용하시오.
  -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만을 사용하시오.
  -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.
  - P280 (보호장갑·보호의·보안경·안면보호구)를(을) 착용하시오.
  - P264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.
  -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.
  -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.
  - P261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의 흡입을 피하시오.
  -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.
  - P260 (분진·흄·가스·미스트·증기·스프레이)를(을) 흡입하지 마시오.
  - P270 이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, 마시거나 흡연하지 마시오.
- 대응**
- P303+P361+P353 피부(또는 머리카락)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복은 벗으시오.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/샤워하시오.
  - P370+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(Section 5. 폭발, 화재시 대처방법에 따라 적절한 소화제)을(를) 사용하시오.
  - P305+P351+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.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. 계속 씻으시오.
  - P337+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  - P308+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  -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(의사)의 진찰을 받으시오.
  - P304+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.
  - P314 불편함을 느끼면 의학적인 조치·조언을 구하시오.
- 저장**
- P403+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
  - P405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.
  - P403+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시오.
- 폐기**
- P501 (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)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시오

#### 다.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

NFPA 지수(0~4단계) : 보건=0, 화재=3, 반응=0

물질의 흐름 또는 혼합에 의하여 정전기가 발생할 수 도 있음.

### Section 3 –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

화학물질명	관용명 및 이명	CAS번호 또는 식별번호	함유량(%)
에틸 알코올 (Ethyl Alcohol)	Ethanol	64-17-5	95
물(Water)		7732-18-5	5

### Section 4 – 응급조치 요령

- 가. 눈에 들어갔을 때** 많은 양의 물이나 생리식염수로 15분 이상 눈을 세척하고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
- 나. 피부에 접촉했을 때** 오염된 의복 및 신발을 즉시 벗고 15분 이상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을 것.
- 다. 흡입했을 때** 노출로부터 환자를 즉시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정지 및 곤란시 인공호흡 실시 및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
- 라. 먹었을 때** 구토를 하지 않도록 하고 의식이 있을 경우 즉시 2~4컵의 물이나 우유를 제공할 것.  
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.
- 마.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** 의료인력이 해당물질에 대해 인지하고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.

### Section 5 – 폭발 · 화재시 대처방법

- 가. 적절한(및 부적절한) 소화제** 적절한소화제: 분말소화제, 이산화탄소, 물분무, 내일코올성 포말  
부적절한 소화제: 자료없음
- 나.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** 열분해생성물: 탄소산화물

#### 다.화재 진압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 조치

화재 및 폭발위험성: 심각한 화재 위험이 있음. 증기 또는 가스는 원거리 발화원으로부터 점화되어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음  
증기는 공기보다 무거워 초기에 지면을 타고 확산될 수 있음  
증기는 공기와 섞여 폭발성 혼합물을 형성할 수 있음.

위험없이 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부터 이동시킬 것.  
방열복 및 공기호흡기등 필요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후 화재진압을  
하고 불가능시 즉각 철수 할 것.

진화가 된 후에라도 상당 시간 동안 물분무로 용기를 냉각시킬 것.  
관계인의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할 것.

### Section 6 – 누출 사고시 대처방법

#### 가.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

누출된 물질을 만지지 말 것. 흡입과 피부 접촉을 피하고 밀폐장소인 경우 공기호흡기 착용 및 환기시키고 발화원을 제거할 것.

#### 나.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

환경 오염을 피하도록 적절한 차단 수단을 사용할 것.  
모래, 흙 혹은 기타 적절한 방벽을 쌓아서, 하수구, 도랑 혹은 강으로  
번지거나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것.

#### 다.정화 또는 제거방법

유출물질은 모래, 점토, 기타 흡착물질로 흡수시킬 것.

### Section 7 – 취급 및 저장방법

#### 가.안전취급요령

피부접촉, 증기흡입 및 눈에 침입 방지, 모든 용기는 접지시킬 것.

#### 나.안전한 저장방법

(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)

접지 및 등전위 접지필요, 옥외 또는 격리된 건물에 보관할 것.

인화성액체와 함께 저장할 것, 혼합금지 물질과 분리할 것.

### Section 8 –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

#### 가.화학물질의 노출기준,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

산업안전보건법 :

-TWA : 1000 ppm , 1900 mg/m<sup>3</sup>

1000 ppm ACHIH TWA

#### 나.적절한 공학적 관리

해당 노출기준에 적합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시 반드시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할 것.  
물질이 폭발농도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기장치는 방폭설비를 할 것.

#### 다.개인보호구

◦호흡기 보호

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 시 물리화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 
방독필터를 결합한 호흡기 보호구를 착용할 것

호흡용 보호구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필할 것

작업환경에 따라 미지농도 또는 기타 생명이나 건강에 영향이 우려될 경우 송기  
마스크, 공기호흡기를 착용할 것

◦눈 보호

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시 화학물질용 보안경을 착용할  
것

화학물질 취급장소 근처에 눈 세척시설 및 비상세안장치를 설치할 것

◦손 보호

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시 화학물질용 안전장갑을 착용할  
것

◦신체 보호

화학물질로 인한 인체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취급시 화학물질용 보호복을 착용할  
것

### Section 9 – 물리화학적 특성

#### 가.외관(물리적 상태, 색 등)

액체(무색)

#### 나.냄새

알코올 냄새

#### 다.냄새역치

자료없음

#### 라.pH

자료없음

#### 마.녹는점/어는점

-117°C

#### 바.초기끓는점/끓는점 범위

79°C

#### 사.인화점

17°C

#### 아.증발속도

1.4

#### 자.인화성(고체,기체)

자료없음

#### 차.인화 또는 폭발범위의 상한/하한

19%/3.3%

#### 카.증기압

5.8 kPa(20°C)

#### 타.용해도

100g/100ml@25°C

#### 파.증기밀도

1.6

#### 하.비중

0.817

#### 거.n-옥탄올/물 분배계수

-0.32

#### 너.자연발화온도

363°C

#### 더.분해온도

자료없음

#### 러.점도

1.41cP(20°C)

## Section 10 – 안정성 및 반응성

가.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	상온, 상압에서 안정함. 중합되지 않음.
나.피해야 할 조건 (정전기방전,충격,진동 등)	열, 스파크, 화염 및 기타 점화원을 피할 것. 용기가 열에 노출되면 파열되거나 폭발할 수도 있음.
다.피해야 할 물질	할로 탄소 화합물, 금속, 금속염, 산화제, 할로겐, 과산화물, 산, 금속 산화물, 염기, 가연성 물질
라.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	열분해생성물: 탄소산화물

## Section 11 – 독성에 관한 정보

### 가.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

자극, 호흡곤란, 두통, 졸음, 현기증, 조정(기능) 손실을 일으킬 수 있음.  
저 체온 또는 발열, 혈압 변화, 구역, 구토, 호흡곤란, 불규칙 심장박동, 졸음, 지남력 상실, 발성 장애, 감정변화, 조정(기능) 손실, 시각 장애, 동공확장, 경련, 혼수를 일으킬 수 있음.  
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.

### 나.건강 유해성 정보

◦급성독성 (노출 가능한 모든 경로에 대해 기재)	경구: LD50 6200mg/kg Rat 경피:자료없음 흡입:LC50 20000mg/l 10hr Rat
◦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	비자극
◦심한 눈손상 또는 자극성	중정도 자극
◦호흡기 과민성	자료없음
◦피부 과민성	자료없음
◦발암성	ACGIH Group A3 IARC Group 1
◦생식세포 변이원성	흰쥐 및 마우스에서 우성 치사 시험-양성마우스 생식 세포에서 이 수성 유발이 보고됨
◦생식독성	알코올의 습관적인 대량 섭취에 의해 사람 태아에 대한 기형 및 그 외의 악영향이 다수 보고됨
◦특정표적장기 독성(1회 노출)	사람의 중추 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두통, 피로, 집중력 저하를 일으킴. 흡입에 의해 기도 자극성, 혼미, 병적 수면을 일으킴
◦특정표적장기 독성(반복 노출)	사람의 간, 신경(간질, 정신착란 등)에 영향을 줌.
◦흡인 유해성	자료없음

## Section 12 – 환경에 미치는 영향

가.생태독성	어류 : LC50 42mg/l 96hr Oncorhynchus mykiss 갑각류 : EC50 2 mg/l 48 hr Daphnia magna 조류 : 자료없음
나.잔류성 및 분해성	잔류성:자료없음 분해성:BOD5/COD=0.57
다.생물 농축성	농축성:자료없음 생분해성:75% 20day(호기성,기타,쉽게 분해됨)
라.토양 이동성	자료없음
마.기타 유해영향	자료없음

## Section 13 – 폐기시 주의사항

가.폐기방법	적용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.
나.폐기시 주의사항 (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)	혼합금지물질과 분리하여 폐기할 것.

## Section 14 – 운송에 필요한 정보

가.유엔번호	1170
나.유엔적정 선적명	Ethanol
다.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	3.
라.용기등급	II
마.해양오염물질(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)	자료없음
바.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대책	화재시 비상조치:F-E 유출시 비상조치:S-D

### Section 15 – 법적 규제현황

가.산업안전보건법	노출기준설정물질
나.화학물질관리법	해당없음
다.위험물안전관리법	제4류 알코올류 400L
라.폐기물관리법	지정폐기물 기타폐유기용제
마.기타 국내 및 외국법	EU 분류정보(확정분류결과):F;R11 EU 분류정보(위험문구):R11 EU 분류정보(안전문구):S2,S7,S16

### Section 16 – 그 밖의 참고사항

가.자료의 출처	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정보 MSDS,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정보시스템, 한국소방 산업기술원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,	
나.최초작성일자	2002. 7. 30	
다.개정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	10 / 2021.02.24	
라.기타	* 이 MSDS는 작성시 당사의 전문지식, 최신정보 등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제공하는 화학물질의 유해/위험성 분류결과는 인용된 참고자료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. 주어진 정보는 안전한 취급, 사용, 공정, 저장, 운송, 폐기 등에 관한 안내 자료일 뿐이며 제품의 질적 특성에 대해 보증하지 않음.	